

서울고등법원

제22민사부

판결

사 건 2005나23133 손해배상(자)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최○○

서울 양천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○○○○○○보험 주식회사

서울

대표이사 ○○○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3가단392800 판결

변론종결 2006. 1. 26.

판결선고 2006. 3. 16.

주문

1.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, 2항을 다음과 같

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85,968,113원과 이에 대하여 2002. 5. 6.부터 2006. 3. 1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(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)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
3. 위 제1항의 가.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7,583,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5. 6.부터 2005. 1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### 2. 항소취지

원고 :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2,773,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5. 6.부터 2005. 1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 :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5. 6.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# 가. 인정사실

이○○는 2002. 5. 6. 07: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9의 14 소재 쌍쌍카바레 건물 2층 계단에서, 성명불상자로부터 칼로 팬티를 찢고 말을 안들으면 찢러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아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후, 울면서 “살려달라”고 하는 원고를 경찰서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며 원고를 그곳에 세워둔 이○○ 소유의 피고 피보험차량인 서울 83나2895호 타우너 승합차량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는데, 갑자기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원고를 유혹하여 성교할 마음을 먹고,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평경찰서 방향이 아닌 구과발 방향으로 진행하고, 이를 알아챈 원고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약 15분간 진행하여,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33의 5 소재 구과발검문소 앞에서 주행 중인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(이하,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)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## 다. 책임의 제한 여부

피고는,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,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,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,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원고가 이○○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이○○이 원고를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, 그 전에 칼로 위협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이○○을 만나 간신히 살아 났다고 생각하던 원고가 다시 자신을 성폭행 하려는 이○○의 의도를 알아챈 후 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이○○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는 상황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이○○으로부터의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,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행위를 피고 주장과 같은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는 없다.

요컨대,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○○이 원고를 납치,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.

[증거] 강제3호증, 강제4호증의 1 내지 3, 강제9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, 변론 전

체의 취지

## 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(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,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,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,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).

### 가. 일실수입

#### (1)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

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0세가 되는 2002. 6. 6.부터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2. 6. 5.까지 원고가 계산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 상당인 월 1,115,026원을 인정한다.

#### (2) 입원치료기간

이 사건 사고일인 2002. 6. 5.부터 4개월간(다툼 없는 사실)

#### (3)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

(가) 정신과 부분 :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기분장애로 감정일로부터 2년간(실제로 2003. 12. 15.부터 같은 달 29.까지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계산의 편의상 감정일을 2004. 2. 6.로 보아 2002. 6. 5.까지) 31%[맥브라이드표 두부, 뇌, 척수 IX-B-2항(직업계수 5) 적용], 그 후 영구적으로 23%[맥브라이드표 두부, 뇌, 척수 IX-B-1항과 2항(직업계수 5) 사이를 적용]

원고는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으로 21.7%의 노동능력을 추가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

부속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정신과 및 신경외과에서 각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정신과에서 앞서 인정한 후유장애 및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, 신경외과에서도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 후유장해로 맥브라이드표 두부, 뇌, 척수 IX-B-2항의 70%에 해당하는 약 21.7%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맥브라이드표의 동일 항목을 지적하고 있고 정신과 감정과 중복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감정결과는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감정이라 할 것이므로, 위와 같이 정신과 감정에 따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이상 위 신경외과 감정결과는 위 정신과 감정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(나) 이비인후과 부분 : 후각소실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3%[미국의학협회(A.M.A.) 신체장애 평가기준표 적용](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. 제12급 중 '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자'에 해당하는 15%라고 주장하나, 위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상의 평가는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른 장애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과도한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)

(다) 한편 피고는,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는 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성폭행 관여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설령 이 사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해 중 일부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고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혼재되어 그 원인과 결과를

확연히 구별하기가 곤란한 이 사건에 있어 성폭행 행위와 이 사건 사고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그렇다면 피고가 추후 성폭행 행위자를 상대로 피고가 배상한 금액 중 성폭행 관여도 상당액을 구상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그 관여도 상당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(라) 종합 :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. 10. 5.까지 100%, 그 다음날부터 2006. 2. 5.까지 33.70%,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5.31%

[증거] 강제1호증, 강제2호증의 1, 2, 강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, 당심의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나. 기왕 치료비

(1)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: 4,000,000원(다툼 없는 사실)

(2) 당심 추가 인정 금액 : 252,110원

[증거] 강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(그 중 1심에서 제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)

#### 다. 향후 치료비

(1) 원고는 2년간의 정신요법 및 투약비 등으로 6,910,000원의 향후치료비를 구하므로 보건대, 위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일 이후 향후 2년 간 약물치료 및 정신적 지지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6,910,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신체감정일(위 2002. 2. 6.)로부터 이미 예상치료기간이 도과하였고, 위 기간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앞서 본 기왕치료비에 포함하였으므로

위 부분 향후치료비는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(2) 원고는 또, 후각장애에 대한 향후 성상신경절차단술 및 스테로이드 분무제 치료 비용으로 7,562,122원을 구하나, 위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하여 성상신경절차단술 및 스테로이드 분무제 치료가 가능하나 원고의 위 증상은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여서 위 각 치료법으로 인한 치료의 가능성이 회의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한편 그 치료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 향후치료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라. 공제

(1) 피고가 2002. 6. 28.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한 7,000,000원을 공제한다.

(2) 피고는 원고가 이○○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한 5,000,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원고가 이○○으로부터 5,000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한편 강제9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이○○ 사이에 위 금원의 수수로서 형사합의를 하되 민사상의 모든 손해배상은 이○○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경우 위 합의금을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고,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기로 한다.

[증거] 을제2호증의 기재

마. 위자료

원고의 연령, 사고발생의 경위,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, 치료기간, 과실의 정도,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5,000,000원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4,000,000원을 인정한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85,968,1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. 5. 6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. 3. 16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한위수       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위현석           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판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 사       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오선희            \_\_\_\_\_

